청 주 지 방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3노9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정혁(기소), 임지연(공판)
변 호 인	<생략>
원 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 2013. 11. 20. 선고 2013고단786 판결
판 결 선 고	2014. 4. 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

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판결 선고 전에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 부분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7. 00:45경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에쿠스 승용차를 이용하여 운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후인 2013. 4. 7. 01:13경에 측정된 피고인에 대한 음주수치, 단속 및 측정 당시의 피고인의 행동 양상,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을 이유로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음주운전을 한 시각이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국면에 속하는지 아니면 최고치에 이른 후 하강하고 있는 국면에 속하는지를 확정할 수 없고 오히려 혈중알콜농도가 상승하는 국면에 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에는, 그 음주운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측정한 혈중알콜농도를 기초로 이른바 위드마

크 공식 중 시간 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위드마크 2 공식)만을 적용하여 혈중알콜농도 측정시점으로부터 역추산하여 음주운전 시점의 혈중알콜농도를 확인할 수는 없고(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두15035 판결 등 참조), 일반적인 과학적 견해에 의하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는 피검사자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 속도, 음주 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개인차가 있기는 하지만 통상 음주 후 30분 내지 90분 사이에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그 후로 시간당 약 0.008% ~ 0.03%(평균 약 0.015%)씩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는 하나, 음주 후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당 어느 정도의 비율로 증가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으므로 그 상승분을 산정할 수는 없다.

한편 음주운전 시점과 혈중알콜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의 음주량, 음주시간에 관하여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작성시에는 2013. 4. 7. 00:30경까지 맥주 3잔을 마셨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조사시에는 2013. 4.

6. 23:30경부터 2013. 4. 7. 00:10경까지 친구와 맥주 2병 정도를 나누어 마셨다고 진술하였으며, 검찰조사시에는 2013. 4. 6. 23:00경부터 2013. 4. 7. 00:00경까지 맥주 2병을 친구 3명과 나누어 마셨다고 진술하였고, 당심 법정에서는 2013. 4. 6. 23:00경 이후 장례식장에 가서 술을 마셨고 2013. 4. 7. 00:00경 이후에 거기서 나왔다고 진술한 사실(마신 술의 종류 및 양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이후 측정된 음주수치에 비추어서도 그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② 피고인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관학교 정문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같은 날 00:45경 졸음운전으로 신호대기 중인 앞 차량을 들이받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 ③ 경찰이 같은 날 01:13경 음주측정기를 이용해 피고인의 음주상태를 측정하였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59%로 측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3) 위에서 본 법리 및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의 음주 시작 시각을 2013. 4. 6. 23:00경[1])으로 보고 초기에 집중적으로 음주를 하였다면 이로부터 90분이 훨씬 지난 이 사건 교통사고 시점은 이미 혈중알콜농도의 하강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이 사건 교통사고 시점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인 0.05% 이상이라고 의심할 여지도 있으나, 피고인의 음주 시작 시각, 음주속도, 안주 섭취 여부, 피고인의 체질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상황만을 가정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05% 이상이었으리라고 쉽게 추단할 수는 없는 점, ② 반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상황, 즉 피고인이 음주를 최종적으로 한 시각에 집중적으로 술을 마셨음을 전제로 이 사건 교통사고시의 혈중알콜농도를 산정한다면(피고인에게 유리한 상황을 적용하였을 경우에도

1) 피고인의 검찰 진술(수사기록 62면)

이 사건 교통사고 시점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넘는다면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함에 무리가 없을 것이다), 피고인은 음주를 마친 때로부터 약 35~45분 후에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는 물론 그로부터 28분 후인 음주측정시에도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 점(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최종 음주시각을 기준으로 하면 더욱 그러하다), ③ 음주측정기에 의해 호흡측정을 한 01:13경의 혈중알콜농도 측정치 0.059%로는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한 이후의 하강기에 해당하는 구간의 혈중알콜농도만을 역추산할 수 있을 뿐이고 상승기에 해당하는 구간에 대하여는 이를 산정할 수 없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승기의 혈중알콜농도가 어느 정도의 비율로 상승하는지에 관하여 현재까지 과학적으로 알려진 바는 없는 점, ④ 이 사건 교통사고 후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0.059%로 처벌기준치인 0.05%를 약간 넘는 정도에 불과하고 이 사건 교통사고 시점과 음주측정을 한 시점의 시간 간격이 28분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위 28분 동안의 혈중알콜농도 상승분이 0.009% 이상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 시점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을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는 점[상승기에 해당하는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가 일정한 비율로 상승한다고 가정해 보더라도, 최종 음주시로부터 약 63분 또는 73분 후인 01:13경에 측정된 음주수치가 0.059%이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인 00:45경의 혈중알콜농도는 약 0.032%(= 0.059% × 35/63) 또는 0.036%(= 0.059% × 45/73)로서 피고인의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 미만이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나아가 최종 음주시각보다 앞선 23:30경(피고인이 경찰조사시 진술한 음주 시작 시각)에 집중적으로 음주를 하였다고 보더라도, 이로부터 90분이 지난 2013. 4. 7. 01:00경에 혈중알콜농도가

약 0.0607%로 최고치에 도달하고[2] 다시 이때로부터 15분 전인 이 사건 교통사고 시점의 혈중알콜농도는 0.0506%로 처벌기준치를 아주 근소하게 초과하는 정도에 불과하게 되는바,[3] 사후에 측정된 수치를 토대로 사건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를 산출하여 범죄의 구성요건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이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고 이 사건에 있어서 위와 같은 산출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들에 관하여 달리 입증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거나 경계선상에 있는 것으로 추산된 수치만으로는 이 사건 교통사고 시점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으리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⑤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심야에 잠시 졸음운전을 하여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추돌한 것으로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이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차량 파손 및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바,[4]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및 정황에 비추어서도 피고인이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5]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에 공소사실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059%의 상태에 있었다거나 나아가 적어도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

2)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위 최고시점으로부터 시간당 0.008%씩 혈중알콜농도가 감소한다고 가정하여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면, 위 최고시점의 혈중알콜농도는 약 0.0607%[= 0.059 + (0.008 × 13/60)]가 된다.

3) 이 사건 교통사고 시점부터 위 최고시점까지 혈중알콜농도가 일정한 비율로 상승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 [0.059 + (0.008 × 13/60)] × 75/90

4) 피고인이 정차 중인 피해차량을 추돌하였음에도 피해차량의 운전자는 다친 바가 없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 상해진단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5) 피고인은 사고 직후 동승자인 피해자 ◇◇◇를 차량에서 꺼내주려고 하거나 119에 신고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고 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였고, 이 사건 사고 직후의 상황에 관하여 명료하게 기억하고 있다. 한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의 언행상태가 '횡설수설'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사고 직후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피고인은 검찰조사시 '사고 당시 너무 당황스럽고 정신이 없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63면) 수사기관의 물음에 조리있게 말을 하지 못하자 위와 같이 기재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위법이 있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7. 00:45경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남일면 쌍수리에 있는 공군사관학교 정문 앞 도로를 청주시 방면에서 남일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34세)가 운전하는 액센트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에쿠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검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기록에 의하더라도 달리 이 사건 사고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또는 제4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제4조 제1항 본문,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 ◇◇◇는 피고인을 통하여 공소제기 후인 2013. 10. 3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한 사실(공판기록 46 내지 48면) 및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수사기록 17면)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또는 제6호에 의하여 기각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공소기각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의 요지는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제2의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바, 이 부분 공소는 위 제3의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거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

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도형 ______________

판사 송효섭 ______________

판사 박상렬 ______________